

정부<포상금> 및 <경기지도자 연구비> 근거규정 명확해야

□ (대한체육회) 밴쿠버 동계 올림픽 정부<포상금> 미지급 문제

- 정부는 국제대회에서 국위 선양한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정부 <포상금>에 대한 별도의 규정 및 기준은 없음. 더불어 미지급 규정도 없음.
- <2010 밴쿠버 동계 올림픽> 메달리스트 정부<포상금> 김기훈 감독, 이정수 선수, 박윤기 선수 지급 제외.

<2010 밴쿠버 동계 올림픽 메달리스트 포상금 미지급 현황>

종목	성명	책정액	박탈액	비고
쇼트트랙	김기훈 감독	52,000,000원	52,000,000원	
쇼트트랙	이정수 선수	95,000,000원	95,000,000원	
쇼트트랙	박윤기 선수	15,000,000원	15,000,000원	

- 이정수 선수, 박윤기 선수의 경우, 선수선발 시 담합과 허위 자술서 제출 등의 국가대표로서의 책임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에 따른 사회적 물의야기 책임과 깨끗하고 공정한 체육계 구현을 위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김기훈 감독의 경우, 국가대표 감독으로서 선수단 관리 소홀로 인해 밴쿠버 동계 올림픽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대상에서 제외.
 - ☞ <대한빙상경기연맹 상벌위원회 주문 내용>, 김기훈 감독은 국가대표 선발전 당시 담합에 가담한 사실은 없으나, 국가대표 감독으로 선임되어 올림픽 참가 시 국가대표선발전의 담합사실을 알게 되었고, 세계선수권대회 개인출전권과 관련하여 본 연맹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묵인, 방조한 사실이 인정됨. 이에 국가대표 감독으로서의 관리감독 소홀책임을 인정됨으로 근신에 처하고, 3년간 연맹활동 제한.
- 그러나, 쇼트트랙 담합사건과 관계있는 당시 경기심판위원이자 대표팀 코치인 최광복은 대한빙상연맹활동 1년 제한을 받았지만 2010 밴쿠버 동계 올림픽

픽 메달리스트 정부포상금 3,900만원을 지급 받았음.

<2010 밴쿠버 동계 올림픽 메달리스트 포상금 지급 현황>

종목	구분	성명	세부종목	지급액	비고	
스피드	지도자	김관규	스피드	52,000,000		
		김용수	스피드	39,000,000		
	선수	모태범	남 500M 금, 남 1,000M 은	60,000,000		
		이상화	여 500M 금	40,000,000		
		이승훈	남 10,000M 금, 남 5,000M 은	60,000,000		
쇼트트랙	지도자	최광복	금메달1, 추가메달1	39,000,000		
	선수	이호석	남 1,000M 은, 남 5,000M R 은	35,000,000		
		성시백	남 500M 은, 남 5,000M R 은	35,000,000		
		이은별	여 1,500M 은	20,000,000		
		김성일	남 5,000M R 은	15,000,000		
피겨	지도자	박승희	여 1,500M 동, 여 1,000M 동	24,000,000		
		브라이언 오서	피겨	30,000,000		
	선수	김연아	여 싱글 금	40,000,000		
				13명	489,000,000	

□ (체육진흥공단) 밴쿠버 동계 올림픽 <경기지도자 연구비> 미지급 문제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제대회에서 국위를 선양한 선수를 대상으로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을 지급. 그리고 국제대회에 출전하기 위한 국가대표선수 강화훈련에 참가하여 해당선수 또는 팀을 직접 지도하고 메달획득에 공헌한 경기지도자에게 <경기지도자연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제24조, 제36조.
- 빙상연맹 사건과 관련 있는 박윤기 선수와 이정수 선수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지급 되었지만, 대표팀 감독 김기훈 및 전재목, 최광복 코치에 대한 <경기지도자 연구비>는 지급 보류 상태.
 - ☞ 지급대상 경기지도자 연구비 : 1인당 4,670만원(3인 동일)
- 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 제19조제1항의4에 의거,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령자격 상실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중과실을 제외한 과실범은 제외한다고 되어있음. 따라

서 곽윤기, 이정수 선수는 빙상연맹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지만 동조항에 해당되지 않아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지급받음.

○ 그러나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 경기지도자연구비의 제41조 지급제한 조항을 보면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어, 명확하지 않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표팀 감독 김기훈 및 코치에 대한 <경기지도자 연구비>는 일단 지급이 유보된 상황.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추이를 살펴본 후 지급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함.

빙상연맹 사건경과

대한체육회 특정감사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모의 여부 등에 대한 규명 및 처벌 요구

대한빙상연맹 공동조사위원회 구성 및 조사

전재목 영구제명

김기훈 연간 연맹활동 제한

최광복 연간 직무활동 제한 권고

대한빙상연맹 상벌위원회 결정 심 및 심

전재목 제명

김기훈 근신 연간 연맹활동 제한 ('10.3.30 ~ '10.4.7)

최광복 사퇴권유 연맹활동 년 제한

○ ('10.4.13 ~ '10.4.23)

- :

- : 3

- : 3

○ - 1 ('10.4.30) 2 ('10.5.19)

- :

- : (3)

- : (1)

질의시작 국제대회에서 국위 선양한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해 포상금지급은 대한체육회 에서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체육진흥공단>에서 국제대회에서 국위를 선양한 선수에게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을 지도자에게 경기지도자연구비 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지난 밴쿠버 동계올림픽 에서도 빙상종목에서 많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둬 우리 국민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선사 했던 것을 모두 기억 할 것입니다

하지만 쇼트트랙 종목에서 일부 선수와 지도자가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어떻게 되었나?

이정수 곽윤기 선수 김기훈 감독 정부 포상금 지급 제외
이정수 곽윤기 선수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지급
김기훈 감독 및 코치 <경기지도자 연구비> 미지급

질의1 정부는 국제대회에서 국위 선양한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정부 <포상금>에 대한 별도의 규정 및 기준은 없음. 더불어 미지급 규정도 없음.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 정부<포상금> 김기훈 감독, 이정수 선수, 곽윤기 선수 지급 제외.

이정수 선수, 곽윤기 선수의 경우, 선수선택 시 담합과 허위 기술서 제출 등의 국가대표로서의 책임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로 인해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김기훈 감독의 경우, 국가대표 선발전 당시 담합에 가담한 사실은 없지만, 대표팀 감독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징계사유로 포상금 미지급 처리했다는 것은 다소 이해가 어려움.

그러나, 쇼트트랙 담합사건과 관계있는 당시 경기심판위원이자 대표팀

코치인 최광복은 대한빙상연맹활동 1년 제한을 받았지만 2010밴쿠버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 정부포상금 3,900만원을 지급 받았음.

미지급에 대한 형평성이 없는 것 아닌가? 특별한 미지급 근거도 없지 않는가?

질의2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정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빙상연맹 사건과 관련 있는 곽윤기 선수와 이정수 선수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지급 되었지만, 대표팀 감독 김기훈 및 전재목, 최광복 코치에 대한 <경기지도자 연구비>는 지급 보류 상태임.

< >

김기훈 감독의 경우, 국가대표 선발전 당시 담합에 가담한 사실은 없지만, 대표팀 감독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고, 징계 받은 사실 때문에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 경기지도자연구비의 제41조 지급제한 조항을 근거로 지급을 보류함.

명확하지 않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표팀 감독 김기훈 및 코치에 대한 <경기지도자 연구비>는 일단 지급을 유보하겠다고 공단측은 밝히고 있는데, <경기지도자 연구비> 지급유보를 이사회에서 결정 한 것인가? 동사건이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 경기지도자연구비의 제41조 지급제한 조항에 부합하는 사건이라고 보는가?

□ 사실 배경

○ <2009/2010년 빙상 쇼트트랙 국가대표선발전('09.4.25)> 1000m 준결승 경기에 앞서 전재목 코치가 곽윤기 선수를 불러, '이정수선수가 결승전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지시, 곽윤기선수는 이정수 선수를 도와주었다고 주장.

○ <2009/2010년 빙상 쇼트트랙 국가대표선발전('09.4.25)> 1000m 준결승 경기에서 이정수 선수는 본인이 처음부터 선두로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

○ 이러한 도움을 준 대가로, 전재목 코치는 <2010ISU쇼트트랙세계선수권대회(2010.3.19~21,불가리아소피아)>시, 출전엔트리 제출과 관련 대한빙상경기연맹에서 제정한 대표선수단 운영규정 및 기준에 따르지 않고, 전재목 코치가 강압적으로 이정수 선수에게 출전 포기 사유서를 쓰도록 종용. 결과적으로 규정에 위배되는 엔트리 제출사실 인정됨.

☞ 대표선발전 순위 : 이정수 3위, 곽윤기 5위(개인엔트리는 1위-3위가 출전)

○ 이 과정에서 이정수 선수는 본인의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대회종료 후 '코치의 강압에 의해 출전을 포기했다'는 주장을 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

○ 이에, <대한체육회> 감사실에서 특정감사 실시한 후, <공동조사위원회(정부, 대한체육회, 연맹 및 외부인사)>를 구성하여 조사 실시.

□ 진행내용

- 2010.3.30~4.7 : <대한체육회> 특정감사 실시
 -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발방법, 운영 검토 및 선발전 부정적 지적
 - 2010세계쇼트트랙선수권대회 개인전 출전선수 부정적 지적
- 2010.4.14~23 : <공동조사위원회> 조사(총 6차례) 실시
 - 이정수,곽윤기선수 담합행위가 인정되므로 각각 자격정지 1년 권고
- 2010.4.29~30 : <대한빙상경기연맹> 제9차~10차 상벌위원회 개최

대한체육회 감사결과 및 공동조사위원회 조사결과로 볼 때 담합행위 인정, 각각 자격정지 3년 의결 결정.

- 2010.5.17~18 : <대한빙상경기연맹> 제11차~12차 상벌위원회 개최
이정수,곽윤기선수 재심요청에 따른 심의결과 각각 자격정지 1년 의결.
- 2010.5.19 : <대한빙상경기연맹> 제5차 이사회 개최
대한체육회 감사결과 및 공동조사위원회 조사결과로 볼 때 담합행위 인정되어 각각 자격정지 1년 의결 등 징계 결정.

1. 전재욱 코치는 상벌위원회 규정 제3장 징계 제13조 1항 1호에 근거 : **제명**
(연맹임원, 위원회위원, 공식문서에 대한 등재, 코치박스지도 행위 등 금지)
2. 김기훈 감독은 국가대표 감독으로서의 관리감독 소홀책임이 인정됨으로 상벌위원회 규정 제3장 징계 제13조 1항 2호에 근거 : **근신 (연맹활동 3년 제한)**
3. 경기심판위원회 (이윤숙, 김범주, 윤재영, 송재근, 최광복)
경기심판위원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 (연맹활동 1년 제한)**
4. 이정수 선수, 곽윤기 선수
대한체육회 감사결과 및 공동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로 볼 때 담합행위가 인정되므로 상벌위원회 규정 제3장 징계 제13조 1항 1호에 근거하여 **각각 1년 자격정지**

- 2010.5.27/31 이정수,곽윤기선수 <대한체육회>에 **이의신청** 제기
- 2010.6.8 : <대한빙상경기연맹> 제6차 이사회(제도개선 건)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 제도개선 : 기존 1차 변경후 3차로 확대
연맹의사결정 구조개선 : 의사결정방식을 기존 회장단의 중심구조에서 이사회 중심구조로 변경
- 2010.7.1 : <대한체육회> 제6차 **법제상벌위원회** 개최
이정수,곽윤기선수 및 연맹 관계자 진술청취 및 질의
관련 제출 자료 검토
- 2010.7.20 : <대한체육회> 제7차 **법제상벌위원회** 개최

종 목	신청인	소속 및 직위	처분내용	징계일자	징계 의결기관
빙 상- (쇼트트랙)	이정수	단국대 3학년	자격정지 6개월	2010.07.20	대한체육회 제7차 법제상벌위원회 결정내용
	곽윤기	연세대 3학년	자격정지 6개월		